

법인세 신고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아래 주요 신고 안내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홈택스 쪽지함 및 우편으로 제공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임업체가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 제공

-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놓치기 쉬운 항목, 누락하기 쉬운 항목** 등의 **자료**를 해당 법인에게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제공

〈주요 안내 항목〉

-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자료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내역
 - 지출증명 없는 경비 분석자료, 공제·감면 부적정 분석자료
 - 연구전담부서 취소 등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불가능 자료
 -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국외 대여금 이자 등 국외원천소득 분석자료
- 업종별·거래유형별 잘못 신고하거나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신고한 유권해석사례, 쟁송사례 및 세법개정내용

최대한의 신고편의 제공

- 오는 **3월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납세자 유형별**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종전까지 수동으로 제출하던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PDF화일로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신고시부터 기업회계와 일치되도록 표준 재무제표가 개정되었으므로 구서식으로 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 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신고안내 책자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수록

신고 후 제공자료에 대한 신고누락이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할 예정임

※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